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무역투자실 1개 정책관 등 및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원전전략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의 정제 시설·비축시설, 주유소, 대규모점포 및 안전관리 대상 제품의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6급 2명)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13. ~ 1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956”을 “9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945”를 “9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91”을 “888”로 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378”을 “377”로 하고, 일반직 계 “378”을 “3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2”를 “371”로 한다.

별표 5 1) 및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

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① 산업 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 라 <u>2024년 12월 31일까지</u> 존속 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 획관 1명을 둔다. ② ~ ④ (생 략)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① ---- ----- ----- ----- -- <u>2026년 12월 31일</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56</u>	<u>953</u>	-3
·	·	·	
·	·	·	
일반직 계	<u>945</u>	<u>942</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91</u>	<u>888</u>	-3
·	·	·	
·	·	·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78</u>	<u>377</u>	-1
일반직 계	<u>378</u>	<u>377</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72</u>	<u>371</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8